

제3075호  
2024. 3. 20.

발행인: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길성  
 편집인: 홍보담당관 유진영  
 전화: 3396-4955  
 (<http://www.junggu.seoul.kr>)

고 시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4-22호

## 서소문구역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

1. 건설부고시 제368호(1973.09.06.)로 태평로2가 재개발구역 지정 및 건설부고시 제285호(1978.09.06)로 서소문제2구역 재개발구역 지정되어, 건설부고시 제428호(1978.12.29.)로 태평로2가구역, 서소문제2구역 변경(통합) 및 재개발사업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233호(2020.06.04.)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725호(2021.12.30.)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,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2-84호(2022.09.21.)로 사업시행계획 인가되고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3-39호(2023.06.28.)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된 서소문구역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,
2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, 「같은법」 제7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
2024년 3월 20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가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: 서소문구역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
나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
- 2) 면 적 : 3,530.7㎡(대지 2,667.40㎡, 정비기반시설 863.3㎡(※측량면적:860.2㎡))

다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- 성 명 : 제이비우리캐피탈(주) 외 2인(대표 박춘원)
- 주 소 :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6, 18층(금암동)

라. 관리처분계획인가일 : 2024. 3. 20.

마.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

- 1)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

| 대지면적<br>(㎡) | 건축면적<br>(㎡) | 건폐율<br>(%) | 연면적<br>(㎡) | 용적률<br>(%) | 층 수<br>(층)      | 높이<br>(m) | 용 도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
| 2,677.4     | 1,525.62    | 57.20      | 39,949.03  | 965.73     | 지상19층<br>/ 지하7층 | 89.62     | 업무시설, 판매시설 |

◎ 고 시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제2024-22호 : 서소문구역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..... | 2 |
| 제2024-23호 : 중구 빈집정비계획 고시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| 4 |

● 공 고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제2024-327호 : 2024. 1. 1.기준 개별주택가격(안) 열람 및 의견제출 공고 ..... | 8 |
| 제2024-334호 : 준용도로 변경(폐지)공고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| 9 |

※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.  
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<<http://www.junggu.seoul.kr>(행정정보→구보/입법예고) 클릭>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구보게재외 TEL. (02) 3396-4955 / FAX. (02) 3396-9022/3
-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,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.

※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※ 구보는 공무원의 효력을 가지며,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.

[illegible]